

제21장

예외

제21.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 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1장(통신) 및 제12장(디지털 무역)¹의 목적상, GATS 제14조(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21.2조

¹ 이 항은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필수적 안보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군사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3)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그리고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의 목적상, 자국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21.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²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2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²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2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량 또는 지속적인 수량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제8.2조(내국민 대우) 및 제8.3조(최혜국 대우) 그리고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의무

라.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마.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바.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정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이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관세와 그 안에 기재된 예외(가호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21.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5조

비밀유지

한쪽 당사국이 자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21.6조

국제수지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상품 무역의 경우, 1994년도 GATT 및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경우, GATS 제12조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에 따라³, 지급 또는 송금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수립된 조건을 따르며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이 협정의 조항 및 부속서와 합치한다.

3.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그러한 조

³ GATS 제12조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가 우선한다.

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하고, 그것의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시한다.

4.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